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9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5. 11. 17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우리구가 행정자치부에서 선정하는 행정혁신 선도기관 및 시범 평가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직급별 정원조정 및 정원승인에 따른 정원개정을 통하여 조직의 경쟁력은 물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가. 정원증원 내역 : 총8명 (1,298명 -> 1,306명)

(행정6급 1명, 행정7급 3명, 전산8급 2명, 기능직 2명)

1) 지방행정혁신기획단설치에 따른인력증원 :2명(행정6급 1명, 행정7급 1명)

○ 근 거 :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-2887(2005.10.14)호

○ 존속시한 : 2007년 6월 30일

2)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관련 정원보강 : 2명(행정7급 1명, 전산8급 1명)

○ 근 거 :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-2652(2005.09.30)호

○ 존속시한 : 2006년 12월 31일

3) 복식부기보급 관련 전담인력 정원보강 : 2명(행정7급 1명, 전산8급 1명)

○ 근 거 :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-7855(2005.10.14)호

○ 존속시한 : 2006년 12월 31일

4) 신여권발급관련 여권담당공무원 정원보강 : 2명(기능9급 1명, 기능10급 1명)

○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-2704(2005.10.06)호

나. 직급별 정원조정내역

1) 일반직 정원조정 내역 : 5명(+)

○ 일반직5급 : 1명
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(행정자치부령 제253호)」에 의거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비율

7%이내에 있으며,

- 정부시책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정원승인 (총8명)이 있어, 일반직 5급 정원 1명이 증원 사유 발생

○ 일반직6급 : 3명
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(행정자치부령 제253호)」에 의거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비율 19% 이내로 정원을 조정

○ 일반직9급 1명

- 정보화사업관련 웹디자인 전산 계약직 채용

○ 일반직8급 5명 정원조정

- 일반직 8급 결원이 21명으로 5명 정원을 감원조정

2) 기능직 정원조정 내역 : 18명

- 기능6급 3명 :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(행정자치부령 제253호)」에 의거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비율 3% 이내로 정원3명 조정

- 기능7급 6명 :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(행정자치부령 제253호)」에 의거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비율 6%이내로 정원 6명 조정

- 기능8급 9명 :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(행정자치부령 제253호)」에 의거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비율 14%이내로 정원 9명 조정

○ 기능직10급 18명 정원조정

- 현재 기능직 10급 결원이 64명으로 18명 정원을 감원 조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03조(지방공무원단체의 공무원)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
-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-2652(2005. 9.30)호 : 사업별예산제도 정원보강
-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-2704(2005.10.06)호 : 여권담당공무원 정원보강
-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-7855(2005.10.14)호 : 복식부기 확산 전담인력 승인
-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-2887(2005.10.19)호 : 지방행정혁신 인력보강
- 기획예산과-7013(2005.11.01)호 : 지방계약직공무원(전산분야)

나. 예산조치 : 확보되었음

다. 합의사항 : 합의되었음

라. 기타참고사항

- 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- 2) 입법예고 : 생략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계 계 호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(정원의 총수)중 “1,298명”을 “1,306명”으로 하고, 동조제1호중 “1,271명”을 “1,279명”으로 한다.

[별표 1]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3조 관련) 총계란 중 총계“1,298”을 “1,306(6)”으로 하고, 구분청 “967”을 “975(6)”으로 한다.

일반직계란 중 총계 “943”을 “949(6)”으로 하고, 구분청 “638”을 “644(6)”으로 한다.

일반직 5급 소계란 중 총계 “58”을 “59”로 하고, 구분청 “24”를 “25”로 한다.

일반직 6급 소계란 중 총계 “172”를 “176(1)”로 하고, 구분청 “132”를 “136(1)”로 한다.

일반직 7급 소계란 중 총계 “270”을 “273(3)”으로 하고, 구분청 “197”을 “200(3)”으로 한다.

일반직 8급 소계란 중 총계 “313”을 “310(2)”로 하고, 구분청 “207”을 “204(2)”로 한다.

일반직 9급 소계란 중 총계 “122”를 “123”으로 하고, 구분청 “72”를 “73”으로 한다.

기능직계란 중 총계 “342”를 “344”로 하고, 구분청 “322”를 “324”로 한다.

기능직 6급 소계란 중 총계 “5”를 “8”로 하고, 구분청 “5”를 “8”로 한다.

기능직 7급 소계란 중 총계 “12”를 “18”로 하고, 구분청 “12”를 “18”로 한다.

기능직 8급 소계란 중 총계 “35”를 “44”로 하고, 구분청 “33”을 “42”로 한다.

기능직 9급 소계란 중 총계 “86”을 “87”로 하고, 구분청 “80”을 “81”로 한다.

기능직 10급 소계란 중 총계 “204”를 “187”으로 하고, 구분청 “192”를 “175”로 한다.

※ ()는 한시정원으로, 총계에 포함한 정원임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한시정원) 이 조례에 의하여 증원되는 지방공무원정원 총6명중 4명(사업별 예산제도 도입관련 전담 인력 및 복식부기보급 관련 전담인력)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까지, 2명(지방행정혁신기획단설치에 따른 인력)에 대하여는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영등포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<u>1298명</u>으로 하고,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1271명</u></p> <p>2 (생략)</p>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<u>1306명</u> ----- -----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1279명</u></p> <p>2 (현행과 같음)</p>

신·구 조문 대비표

[별표 1]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3조 관련)

	총계		구본청		구의회 사무국		보건소		동	
	현행	개정	현행	개정	현행	개정	현행	개정	현행	개정
총계	1,298	1,306(6)	967	975(6)	27	27	92	92	212	212
사무국	1	1	1	1						
구청장	1	1	1	1						
일반직	943	949(6)	638	644(6)	14	14	79	79	212	212
3급	1	1	1	1						
4급	7	7	5	5	1	1	1	1		
5급	<u>58</u>	<u>59</u>	<u>24</u>	<u>25</u>	2	2	10	10	22	22
6급	<u>172</u>	<u>176(1)</u>	<u>132</u>	<u>136(1)</u>	3	3	15	15	22	22
7급	<u>270</u>	<u>273(3)</u>	<u>197</u>	<u>200(3)</u>	4	4	25	25	44	44
8급	<u>313</u>	<u>310(2)</u>	<u>207</u>	<u>204(2)</u>	2	2	23	23	81	81
9급	<u>122</u>	<u>123</u>	<u>72</u>	<u>73</u>	2	2	5	5	43	43
행정직	12	12	6	6	6	6				
6급상당	1	1	1	1						
7급상당	7	7	5	5	2	2				
8급상당	3	3			3	3				
9급상당	1	1			1	1				
기능직	342	344	322	324	7	7	13	13		
기능6급	<u>5</u>	<u>8</u>	<u>5</u>	<u>8</u>						
기능7급	<u>12</u>	<u>18</u>	<u>12</u>	<u>18</u>						
기능8급	<u>35</u>	<u>44</u>	<u>33</u>	<u>42</u>			2	2		
기능9급	<u>86</u>	<u>87</u>	<u>80</u>	<u>81</u>	3	3	3	3		
기능10급	<u>204</u>	<u>187</u>	<u>192</u>	<u>175</u>	4	4	8	8		

※ ()는 총계에 포함한 정원이며, ()는 한시정원임